



제 422국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어버이날(5월8일) 공휴일 지정 등〉

■ 윤상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720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윤상현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20.
3. 회부연월일 : 2024. 11.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버이날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기 위한 법정기념일임. 1인 가정 증가·핵가족화로 인해 퇴색되어가는 효 문화를 선양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자식과 부모간의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어버이날을 공식적인 법정공휴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12월 25일 기독탄신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는 성탄절이라는 명칭과는 괴리감이 있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어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하여 공휴일로 지정하고, 기존의 12월 25일 기독탄신일의 명칭을 성탄절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신설 및 같은 조 제9호).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1) ‘어버이날(5월 8일)’을 공휴일로 규정하고(안 제2조제6호 신설), 2) 현행 공휴일 중 12월 25일 ‘기독탄신일’의 명칭을 ‘성탄절’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현행	개정안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u><신설></u> <u>6.·7.</u> (생략) <u>8. 기독탄신일</u> (12월 25일) <u>9.·10.</u> (생략)	제2조(공휴일) ----- ----. 1. ~ 5. (현행과 같음) <u>6. 어버이날</u> (5월 8일) <u>7.·8.</u>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u>9. 성탄절</u> ----- <u>10.·11.</u> (현행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음)

2. 검토의견

1) ‘어버이날(5월 8일)’ 공휴일 지정

「노인복지법」 제6조¹⁾는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한 날로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²⁾에 따른 기념일로서 정부 주관으로 조상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헤아리고 어른과 노인 보호와 관련된 행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개정안은 어버이날이 기리는 대상인 노인 인구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한편,³⁾ 도시화·핵가족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효 사상의 의의를 되새기고 앙양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봄.

다만, 어버이날을 현행법에 따른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 되므로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1) 「노인복지법」 제6조(노인의 날 등) ②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각종 기념일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21	어버이날	5. 8.	보건복지부	조상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헤아리고, 어른과 노인 보호와 관련된 행사를 한다.

3)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 따를 때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010년 10.8%에서 2022년 17.5%로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20.6%로 증가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요인이 될 수 있는 점,⁴⁾ 관공서가 휴무함에 따라 국민 불편이 예상된다는 점 등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휴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인사혁신처는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은 해당 기념일의 의미를 국민적 차원에서 기릴 수 있다는 측면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와 국민 여론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할 문제로,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수(15일)가 주요 선진국 대비 적지 않은 수준이고⁵⁾ 최근 대체공휴일('21년 4일, '23년 2일)을 확대해 온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고용노동부도 유사한 입장으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식과 부모 간에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우리나라의 전체 공휴일의 수가 이미 다른 나라에 비해 적지 않고, 최근 대체공휴일이 확대된 점, 공휴일이 추가적으로 증가될 경우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5) 주요 선진국 공휴일 수 : 영국(8일), 독일(10일), 미국·프랑스(11일), 호주(12일)

2) ‘기독탄신일’을 ‘성탄절’로 명칭 변경

현행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휴일인 12월 25일은 ‘기독탄신일’로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명칭은 1949년 6월 4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대통령령 제124호) 제정 당시 ‘基督誕生日’(기독탄생일)로 규정되었다가 1975년 1월 27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7538호) 개정으로 ‘기독탄신일’로 변경되었고, 이를 2021년 7월 7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동일하게 규정한 것임.

개정안은 현행 ‘기독탄신일’이라는 공휴일 명칭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용어와 괴리감이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는 바, 국민들이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해당 공휴일 명칭을 일상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표준어인 ‘성탄절’로 변경한다는 점⁶⁾에서 입법 취지에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① 문언적으로 성스러운 탄생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성탄절(聖誕節)’이라는 용어를 특정 종교의 기념일을 지칭하는 공식적인 명칭으로 법정화하는 것은 다른 종교계나 종교를 갖지 않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법률 용어로서 가치중립적이지 못하고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소지가 있는 점,⁷⁾

② 법적 효력 등에 있어 일률적이고 구속력 있는 기준이라고 단정

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성탄절’을 “예수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 12월 25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고유명사로 분류하고 있음.

7) 불교계(대한불교조계종)와 원불교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음.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절(節)’이라는 명칭을 갖는 기념일은 ‘한글날’을 제외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4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에 한하여 법정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바, ‘일’ 또는 ‘날’이라는 명칭의 기념일에 비해 격이 높은 것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는 점,

③ 유사 사례로서 불교계의 기념일(음력 4월 8일)을 지칭하던 종전 ‘석가탄신일’을 불교계의 요구를 반영하는 한편 법률용어의 한글화라는 측면도 감안하여 ‘부처님오신날’로 변경한 바 있는 점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바,

종교계와 일반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정 용어로서 적정한 공휴일의 명칭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봄.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하여 제시된 종교계의 의견을 살펴보면, 개신교계(한국교회총연합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및 천주교(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나, 불교계(대한불교조계종)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성인(聖人)이 탄생한 명절이란 의미를 갖는 성탄절이라는 용어를 예수님의 탄생일에만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절(節)’은 국경일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로 ‘부처님오신날’의 경우 ‘날’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일에만 ‘절(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8)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394호, 2017.10.17, 일부개정)

으며, 원불교의 경우 성인(聖人)의 탄생일이라는 성탄절의 문자적 의미를 감안할 때 예수님의 탄생일을 성탄절로 규정하는 것은 성인의 의미를 예수님만으로 한정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인사혁신처는 공휴일의 명칭 변경은 종교단체의 의견 및 국민 여론 등을 수렴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2